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833호
- 나. 제안자 : 박석 의원 (찬성자 30명)
- 다. 제안일 : 2023년 5월 30일
- 라. 회부일 : 2023년 6월 5일

2. 제안이유

- 고령화 및 가구원 수 감소로 의료적 치료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 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노유자시설'은 허용, '의료시설'은 불허하고 있는데, 노유자시설인 '노인 의료 복지시설'에 포함되었던 요양병원은 2011년 「노인복지법」 및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시설1)'로 변경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건축물이 되었음
- 타법 개정으로 인해 본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된 요양병원의 증축 및 신축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규제 상황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서는 '의료시설(+격리병원 포함)', 「의료법」 제3조제3항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3. 주요내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요양병원을 추가함
(안 제2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의료법」 등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3. 6. 8. ~ 6. 12.) 결과 : 의견 없음
- 라.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조례안 개요

- 현행 조례는 2011년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의료법」 및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요양병원(법 개정 전 노인요양병원)²⁾이 ‘노유자시설³⁾’에서 ‘의료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바,
-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요양병원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병원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의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내용

“요양병원의 의료시설 지정 배경”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0년 15.7%에서 2025년 20.6%, 2035년 30.1%,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⁴⁾
- 또한, KDI 경제정보센터의 발표자료⁵⁾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 현재 「의료법」 상 규정된 요양병원은 2011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전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요양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1.12.8일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였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판: 2020~2050년

5) KDI경제정보센터,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 2015.1.6.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위의 통계청 자료로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의료법」 개정('11.1.31. 시행)과 「노인복지법」 개정('11.12.8. 시행)이 이뤄졌으나,
-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요양병원이 기존의 ‘노유자시설’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료시설)’으로 변경되면서 현행 조례⁶⁾ 제27조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요양병원의 증축 및 신축 등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음
-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요양병원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이전과 같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요양병원의 증축 및 신축이 가능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6)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병원급 의료기관(의료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허용(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주거환경 저해 우려로 불허하여, 시행령에서 허용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의원급 병원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함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별표 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요양병원 건축허가 시 고려 사항”

① 형평성 측면

- 노인요양시설(노유자시설)과 요양병원(의료시설)의 주요 차이는 상주 의료 인력인데,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 재분류(노유자시설→의료

시설)를 이유로 요양병원의 증축 및 신축 등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현행 조례의 합목적성 및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겠음

- 또한, 현행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⁷⁾’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마목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⁸⁾’에서 정하고 있는 병원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다양하나,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요양병원만을 허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 이외의 다른 병원 또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이 가능한지 형평성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② 진료비 부담 및 수요 측면

- 서울시 내 요양병원은 2012년 기준 84개소에서 2023년 현재 122개소로 최근 10년간 38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수요가 높아진 것이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7) 「의료법」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8)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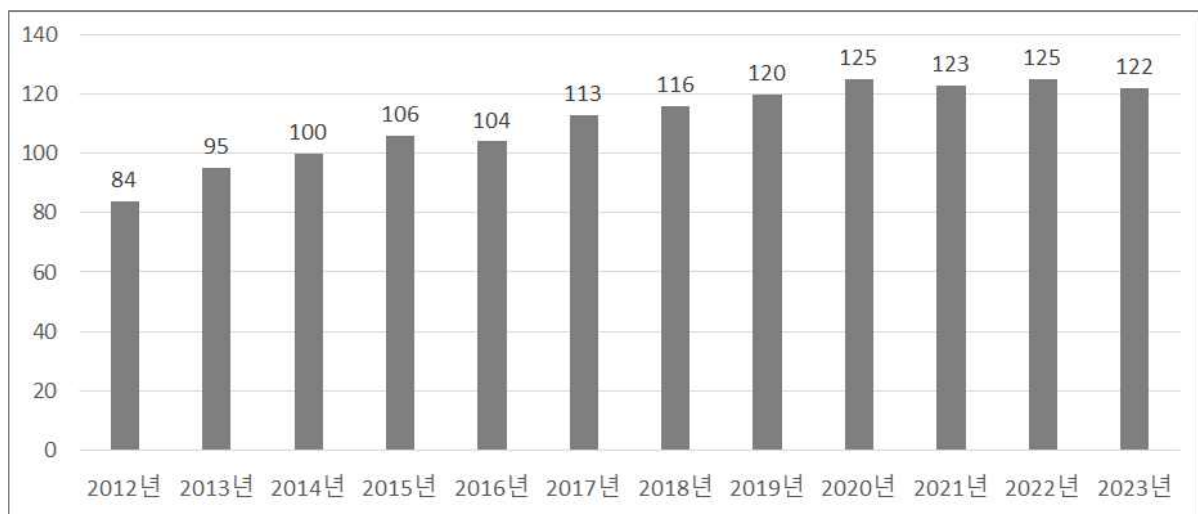
9.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이에, 요양병원의 특성상 고령자, 신체기능 저하 환자 등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장기 입원환자의 증가는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⁹⁾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요양병원의 건축 가능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되어 요양병원의 수가 늘어날 경우, 입소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 진료비 경감 또는 타 지원 방안에 대하여 사전검토¹⁰⁾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10년간 서울특별시 요양병원 변화 추이¹¹⁾ 〉 (단위: 개소)



참고 : 2023.8월 기준

③ 건축물 규모 측면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제2호(영 제71조제1항제3호 관련)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의료시설 건축 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9) kiri보험연구원, 요양병원 현황 및 개선과제

10) kiri보험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비 부담이 적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가 전국적으로 30.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11) KOSIS, e-지방지표, 시군구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

상위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요양병원 준공 후 교통환경, 소음, 유동 인구 등의 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쾌적한 거주환경 유지를 위한 건축물의 기능 및 규모와 관련한 기준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3호관련)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서울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근접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 서울시의 고령자 비율은 전국의 변화추이와 유사하게 증가세하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2년 10.8%, 2023년 18.1%로 10여 년 사이 약 7.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수도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대비할 필요성을 시사함
- 또한, 은퇴 후 거주지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는 해당 지역

내 쉽게 접근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유무라고 볼 수 있으며,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통원 및 입원치료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근거하여 이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요양병원을 주거지 내 인접한 곳에 설치하는 것은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요양 수요 증가 대비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④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요양병원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 후송 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0. 2. 28.>

⑦ 요양병원 개설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입원환자의 안전 및 적절한 진료 등을 위하여 소속 의료인 및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여야 한다.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법」 개정('11.1.31. 시행) 및 「노인복지법」 개정('11.12.8.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이 '노유자시설'에서 '의료시설(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되면서 현행 조례 기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행위가 불가능해진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전과 같이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와 더불어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거주지역과 인접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세부적으로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제2호(영 제71조제1항 제3호 관련)에 따라 일정 조건 아래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의료시설'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요양병원의 용도 재분류(노유자시설→의료시설)를 이유로 요양병원의 증축 및 신축 등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현행 조례의 합목적성 및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겠음
- 또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및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요양 수요증가에 대비한 요양병원의 설치 지역 확대 검토는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만, 현행 「의료법」 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다양하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요양병원만을 허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 이외의 다른 병원 또한 제1종일반주

거지역 내 건축이 가능한지 형평성 측면에서 건축 가능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더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제2호(영 제71조제1항제3호 관련)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의료시설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쾌적한 거주환경 유지를 위한 건축물의 기능 및 규모와 관련한 기준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이에 더하여, 요양병원은 그 특성상 고령자, 신체기능 저하 환자 등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장기 입원환자의 증가는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요양병원의 수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입소 환자의 진료비 경감 및 기타 지원 방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일반 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27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1.~10. (생 략)	1.~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의 <u>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의료법」 제3조3호에 따른 요양병원을 말한다)</u>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의 원 과 같음	의 원 과 같음	1 (분만실 겸용)
2.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3.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4. 응급실	1 (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5. 임상 검사실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6. 방사선 장치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7.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8. 물리 치료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9. 한방 요법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0. 병리 해부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1.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1의2. 탕전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2. 의무 기록실	1	1	1				
13. 소독시설	1	1	1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1	1	1
14. 급식시설	1 (외부 용역업체에	1 (외부 용	1 (외부 용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6. 시체실	1 (종합병원만 갖춘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8. 자가발전 시설	1	1	1				
19. 구급자동차	1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p>20. 그 밖의 시설</p>	<p>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p> <p>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p> <p>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p>
--------------------	--

문서번호

2023053000000032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요양병원(「의료법」 제3조3호 근거)을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 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